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4월 28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구청장 비서실은 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의 접점이자 구청장 보좌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으로서, 그 업무 성격상 기존 행정 라인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명확한 소관 정비가 시급함. 이에 행정교육위원회 소관에 구청장 비서실을 명시하여 비서실 관련 사무의 소관을 분명히 하고, 업무 보고·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 등 의회의 점검 기능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행정교육위원회 소관에 구청장 비서실 관련 사항을 신설함.

(안 제5조제1항2호라목)

3. 입법예고기간: 2026. 4. 28. ~ 2026. 5. 6. (9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24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송파구의회 사무국 의사팀 (전화: 2147-3662, FAX: 2147-3956, e-mail: khjji@songpa.go.kr)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은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 가능하며,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 홈페이지 (www.songpa.go.kr)와 송파구의회 홈페이지 (www.council.songpa.g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